

신용카드 가맹점 부속약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2024.04.20 시행

개정전	개정후	비 고
<p>제3조(매출전표의 접수)</p> <p>표준약관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맹점은 해외카드 중 비자, 마스터카드의 경우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6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.</p>	<p>제3조(매출전표의 접수)</p> <p>표준약관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맹점은 해외카드 중 비자의 경우 오프라인 거래는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3일 이내, 온라인 거래는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8일 이내, 마스터카드의 경우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6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.</p>	<p>- 비자 브랜드 글로벌 규정 변경에 따른 매출전표 접수일 변경</p>